

의안번호	2200142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4.06.27.
추 계 번호	24D0457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 단서 신설(수습 및 복구)	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·도발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명구조, 응급조치,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, 구호조치,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등을 조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2 단서 신설(수습 및 복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수습 및 복구(안 제32조의2 단서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·도발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인명구조, 응급조치,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, 구호조치,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등을 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, 응급조치,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, 구호조치,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이 심의·결정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민방위사태 외에 적의 침투·도발에 의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인명구조 등의 조치와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다만, 적의 침투·도발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, 향후 발생 건수,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, 피해 종류별 건수,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개정안의 취지는 2024년 5월28일부터 6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그에 따른 건물, 차량 등의 파손과 같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임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적의 침투·도발의 범위가 현행법보다 확대될 수 있고 복구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 복구 비용 지원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적의 침투·도발로 인정되는 상황의 발생 건수,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피해의 종류별 건수와 평균 복구 비용,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,630여개가 확인되었고 6월 18일 기준 12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는 검토 중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